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58

제출년월일: 2023. 5.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개정(안 제1조)

- 조례의 목적 구체화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 개정(안 제4조)

- [별표]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 적용

다.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부정 수령자에 대하여 부정 수령액 및 5배의 금액 가산·징수

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조항 개정(안 제5조)

마. 기타 관계 법령 개정·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4. 27. ~ 5. 10.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 제외 대상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평가 제외 대상

5)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23.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를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규정””을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을 “영”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의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에 따라”를 “영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영을 준용하되,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제22조·제26조”를 “영 제17조·제22조·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

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를 “영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을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구분표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구분표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영" ----------. ② ---------- 영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영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
<신 설>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영을 준용하되, 영----------.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 “인사혁신처장----------.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7조----------.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이경미 (☎8215)